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2021. 10. 22.(금)]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2.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출자: 2021. 10. 15.

이종화·노창섭·전홍표·박현재·김우겸·진상락
백승규·이우완·박남용·박성원·정순욱·김경희
의원(12명)

나. 회 부 일 자: 2021. 10.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10.22.)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종화 의원)

가. 제안이유

❍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을 재활용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중고 재활용품의 수리 및 판매 이외에도 재활용 관련 문화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재활용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의안번호 836, P6 ~ P10

❍ 관계 법령: 의안번호 836, P11 ~ P14

❍ 현행 조례: 의안번호 836, P15 ~ P1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박선희)

□ 개정 배경

❍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을 재활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중고 재활용품의 수리 및 판매 이외에도 재활용 관련 문화가 보급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확대하고자 개정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조례 제명 변경은

❍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임.

나.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개정은

❍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제1조(목적)를 정비하는 내용과 현행조례 제2조(정의)에 재활용[1], 재사용[2], 새활용[3]

---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자원재활용법 제2조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새활용(-活用) 또는 업사이클(영어: upcycling 또는 creative reuse)**은 부산물, 폐자재와 같은 쓸모 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예술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이다. 새활용(영: Upcyling)이란 리너 필츠(Reiner Pilz)가 처음 언급하여 탄생한 단어로, 영단어 'Upgrade'와 'Recycling'을 합친 것이다. 한국어 "새활용"은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이라는 뜻의 관형사 "새"와 "재활용"의 "활용"을 합친 말로, 2012년 8월 22일 국립국어원 제8차 말다듬기위원회 회의에서 "업사이클"의 순화어로 제시되었다. 특정 용도로서의 수명을 다해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recyling)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형태나 역할을 가져가되, 새로운 디자인을 더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 즉, 역할을 다한 폐품을 해체하지 않고 잘 활용하여 기존의 제품보다 더 발전한 제품으로 새롭

을 신설하는 내용임.

다. 안 제4조(기능) 개정은

○ 제명 개정에 따른 현행 교환판매장을 재활용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그 기능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임.

라. 기타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개정은

○ 제명 개정에 따른 용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임.

□ 종합의견

○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명시된 '재활용센터'로 제명과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 재활용품의 수리 및 판매에 한정된 역할 외에도 재활용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등 재활용센터의 역할을 시대적 흐름과 시민의 요구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 재활용, 재사용, 새활용에 대한 용어 정의와 새활용 관련 교육 및 전시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는 바 금회 일부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 사료됨.

게 탄생시키는 과정이다. 원제품의 재료를 완전히 변형시켜 사용하는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과는 차이가 있다. 폐품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재사용(re-use)'이며 다른 하나는 '재활용(re-cycling)'이다. 재사용과 재활용 도중 제품의 품질이 저하될 경우, 이는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으로 불리게 된다. 그 중 재활용은 그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 발생을 유발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해왔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활용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인 업사이클링이다 출처> 네이버 위키백과

4. 질의·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대체토론)요지(주요문제점)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사항, 촉구사항 등) : 없음